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여성가족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2024. 9. 00. ~ 9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여성가족부령 제 호

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의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의 평가기간란 중 “2024년 9월 30일”을 “2026년 9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